

「'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」 이의신청 접수 공고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'22년 1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7월 25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. 이의신청 대상 · 방법

- (이의신청 대상) '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
 - ① (보상 대상 제외)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(확인요청 부지급)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 - ② (확인보상 부동의)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 - ③ (방역조치 위반 정정)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·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·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 - ④ (보상금 환수) 「소상공인법」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
 - ⑤ (기타) 관할 시·군·구 담당자 보조*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,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
 - * 휴대전화·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은 있으나,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가 시·군·구 방문 시, 지자체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 보조 지원
 -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 【붙임1】 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·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
 -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상.kr)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,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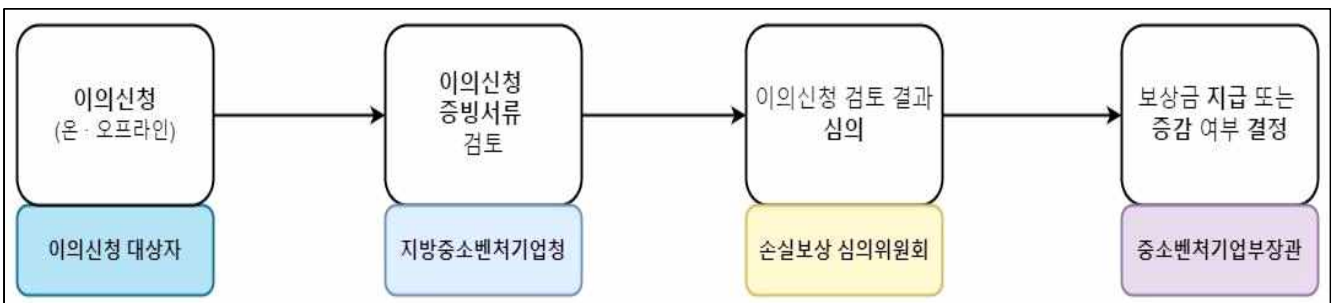
- **(이의신청 방법)** 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상.kr) 접속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 - **(온라인)**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→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**【붙임2】** 첨부하여 신청
 - **(오프라인)** 관할 시·군·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**【붙임3】**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·제출

< 주의사항 >

- ◇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
- 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이의신청 가능
 - ① 관할 시·군·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
 - ② 관할 시·군·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,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
 -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·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
 -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상.kr)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,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

2. 이의신청 절차 · 기간

- **(이의신청 절차)** 온·오프라인 신청 →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→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→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



- ① **(신청)** 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상.kr) 접속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
- ② **(검토)**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진행
(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)
- ③ **(심의)** 이의신청 검토 결과 심의(손실보상 심의위원회)
- ④ **(결정)**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 또는 증감 여부 결정
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
□ **(이의신청 기간)** '22.7.25(월)부터 접수

- ▲ 확인요청 결과 '보상 대상 제외' 통지, ▲ 확인보상 지급 통지,
▲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
*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(9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)

3. 유의사항

- 이의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(붙임2)를 제출해야 하며,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한 경우 이의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
 - 붙임2에서 안내되지 않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'상세내용'란*에 신청 사유를 기재한 후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심사 진행
* ▲(오프라인) 이의신청서의 '상세내용'란 ▲(온라인) 이의신청 접수 화면의 '상세내용'란
 - 신청 유형에 따른 필요 제출서류 이외의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음
 - 적격 증빙서류가 아니거나(예 : 모니터 화면을 직접 촬영한 사진 파일), 품질이 불량하여 내용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
- 이의신청을 청구한 이후에는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의 추가·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
 - 다만 구제 필요성이 인정*되는 경우 이의신청 청구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기부의 서류 추가·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음
* ▲사전에 제출서류가 안내되지 않은 경우 ▲신청자가 성실하게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필요 제출 서류의 일부분이 누락된 경우 등
 - 서류 추가·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,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(90일)은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(발송일, 도달일 포함)만큼 연장될 수 있음

- 제출된 증빙서류는 손실보상금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정부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, 별도 반납하지 않음
-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
 - ▲신속보상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▲직전 단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도과한 경우 ▲이의신청을 이미 제기한 경우

4. 이의신청 문의

□ 전화 문의

-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(☎1533-3300, 평일 09~18시 운영)
- 손실보상 전담창구(평일 09~18시 운영)
 - * 각 시·군·구청 / 지방중소벤처기업청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

□ 온라인 문의

- 손실보상 홈페이지(소상공인손실보상.kr) 접속 후 '채팅상담'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(손실보상114.kr) 직접 접속
 - * 상담원 : 평일 09~18시 상담 / 챗봇 : 24시간 상담 가능

1 보상 대상 제외 (확인요청 부지급)

※ 귀하의 「확인요청 결과통지」에 명시된 ‘보상금 부지급 사유*’ 각각에 해당하는 필요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.

* 보상금 부지급 사유 : ①기업규모 부적합 ②방역조치 미이행 ③매출액 증가

1 기업규모 부적합

- (대상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, 연매출 30억원 초과 중기업이거나, 기업규모 판단이 불가능*한 사업자

*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평균매출액등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7조) 산정 기초자료 부족

< 참고 : '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기업규모 요건 >

기업규모 요건 (하나라도 미충족 시 소기업 미해당)	관련 법령	
	중소기업기본법	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① 매출 규모가 소기업 기준 이하 또는 중기업의 경우 30억원 이하	제2조 제2항	제8조 제1항(별표3)
② 타 기업과 지배구조상 관계없음	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	제3조 제1항 제2호 각목 및 제3조의2
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비영리법인	제2조 제1항 제1~5호	제3조 제2~5항
④ 영업활동 중 (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매출액 확인 가능)	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1항 등 손실보상제도 근거 법령 해석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	

- (제출서류) ▲이의신청서*(필수), ▲기업규모 증빙서류(필수, 7~8p 참조)

* 이의신청 사유를 “손실보상 대상 제외”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“기업규모 초과” 또는 “기업규모 판단 불가” 적시

[※ 기업규모 증빙서류 : '기업규모 부적합 사유(미충족 요건)'에 따라 구분]

① (매출 규모가 ㉠소기업 기준과 ㉢30억원을 모두 초과하는 기업)
매출규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

<매출규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(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)>

<개인사업자>

개업연월일 (사업자등록증 기준)	증빙서류 (㉠, ㉢ 모두 제출)	
~'18.12.31	㉠ "과세기간"이 '19.1.1.부터 '21.12.31.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* (근거 법령 : 「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」)	
	㉢ "신고기간" 또는 "과세기간"이 '19.1.1.부터 '21.12.31.까지인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(근거 법령 : 「부가가치세법」 및 「소득세법」시행규칙)	
	부가가치세 과세유형	제출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(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)
	일반과세자	① "신고기간"이 '19.1.1.~'19.6.30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② "신고기간"이 '19.7.1.~'19.12.31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③ "신고기간"이 '20.1.1.~'20.6.30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④ "신고기간"이 '20.7.1.~'20.12.31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⑤ "신고기간"이 '21.1.1.~'21.6.30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⑥ "신고기간"이 '21.7.1.~'21.12.31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
	간이과세자	① "신고기간"이 '19.1.1.~'19.12.31.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② "신고기간"이 '20.1.1.~'20.12.31.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③ "신고기간"이 '21.1.1.~'21.12.31.인 부가가치세 신고서
면세사업자	① "과세기간"이 '19.1.1.~'19.12.31.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 ② "과세기간"이 '20.1.1.~'20.12.31.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 ③ "과세기간"이 '21.1.1.~'21.12.31.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	
'19.1.1~'19.12.31	㉠ "과세기간"이 '20.1.1.부터 '21.12.31.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	
	㉢ "신고기간" 또는 "과세기간"이 다음과 같이 '20.1.1.부터 '21.12.31.까지인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	
	부가가치세 과세유형	제출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(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)
	일반과세자	① "신고기간"이 '20.1.1.~'20.6.30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② "신고기간"이 '20.7.1.~'20.12.31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③ "신고기간"이 '21.1.1.~'21.6.30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④ "신고기간"이 '21.7.1.~'21.12.31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
	간이과세자	① "신고기간"이 '20.1.1.~'20.12.31.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② "신고기간"이 '21.1.1.~'21.12.31.인 부가가치세 신고서
면세사업자	① "과세기간"이 '20.1.1.~'20.12.31.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 ② "과세기간"이 '21.1.1.~'21.12.31.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	
'20.1.1~'20.12.31	㉠ "과세기간"이 '21.1.1.부터 '21.12.31.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	

	<p>⑥ “신고기간” 또는 “과세기간”이 다음과 같이 ‘21.1.1.부터 ‘21.12.31.까지인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부가가치세 과세유형</th> <th>제출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(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)</th> </tr> <tr> <td>일반과세자</td> <td>① “신고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6.30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② “신고기간”이 ‘21.7.1.~’21.12.31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</td> </tr> <tr> <td>간이과세자</td> <td>① “신고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12.31.인 부가가치세 신고서</td> </tr> <tr> <td>면세사업자</td> <td>① “과세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12.31.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</td> </tr> </table>	부가가치세 과세유형	제출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(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)	일반과세자	① “신고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6.30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② “신고기간”이 ‘21.7.1.~’21.12.31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	간이과세자	① “신고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12.31.인 부가가치세 신고서	면세사업자	① “과세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12.31.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
부가가치세 과세유형	제출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(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)								
일반과세자	① “신고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6.30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② “신고기간”이 ‘21.7.1.~’21.12.31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								
간이과세자	① “신고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12.31.인 부가가치세 신고서								
면세사업자	① “과세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12.31.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								
‘21.1.1~’22.3.31	<p>⑦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손익계산서</p> <p>① 일반적으로 공정·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</p> <p>②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음을 확인하고, 해당 기장자 본인이 서명날인할 것</p> <p>③ 이의신청자의 개업연월일(사업자등록증 기준)을 고려하여 회계기간이 다음과 같을 것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개업연월일</th> <th>회계기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‘21.1.1.~’21.3.31.</td> <td>‘21.4.1 ~ ’22.3.31.</td> </tr> <tr> <td>‘21.4.1.~’22.2.28.</td> <td>개업연월 다음 달 초일 ~ ‘22.3.31.</td> </tr> <tr> <td>‘22.3.1~’22.3.31</td> <td>개업연월일 ~ ‘22.3.3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되도록 월별 손익계산서를 취합한 자료로 제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회계기간이 연 단위로 끊어지지 않으므로 소득세·법인세 신고시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기간이 정확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</p> <p>⑧ “과세기간”이 ‘21.1.1.부터 ‘21.12.31.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</p>	개업연월일	회계기간	‘21.1.1.~’21.3.31.	‘21.4.1 ~ ’22.3.31.	‘21.4.1.~’22.2.28.	개업연월 다음 달 초일 ~ ‘22.3.31.	‘22.3.1~’22.3.31	개업연월일 ~ ‘22.3.31
개업연월일	회계기간								
‘21.1.1.~’21.3.31.	‘21.4.1 ~ ’22.3.31.								
‘21.4.1.~’22.2.28.	개업연월 다음 달 초일 ~ ‘22.3.31.								
‘22.3.1~’22.3.31	개업연월일 ~ ‘22.3.31								

<법인사업자>

법인설립연월일 (법인등기부 기준)	증빙서류 (㉠, ㉡ 모두 제출)								
~’18.12.31	“사업연도”가 ‘19.1.1.부터 ‘21.12.31.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(근거 법령 : 「법인세법」 시행규칙)								
‘19.1.1~’19.12.31	“사업연도”가 ‘20.1.1.부터 ‘21.12.31.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								
‘20.1.1~’20.12.31	“사업연도”가 ‘21.1.1.부터 ‘21.12.31.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								
‘21.1.1 ~’22.3.31	<p>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손익계산서</p> <p>①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상법」에 근거한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 손익계산서일 것</p> <p>②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음을 확인하고, 해당 기장자 본인이 서명날인할 것</p> <p>③ 이의신청자의 회사성립연월일(법인등기부 기준)을 고려하여 회계기간이 다음과 같을 것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개업연월일</th> <th>회계기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‘21.1.1.~’21.3.31.</td> <td>‘21.4.1 ~ ’22.3.31.</td> </tr> <tr> <td>‘21.4.1.~’22.2.28.</td> <td>개업연월 다음 달 초일 ~ ‘22.3.31.</td> </tr> <tr> <td>‘22.3.1~’22.3.31</td> <td>개업연월일 ~ ‘22.3.3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되도록 월별 손익계산서를 취합한 자료로 제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회계기간이 연 단위로 끊어지지 않으므로 소득세·법인세 신고시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기간이 정확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</p>	개업연월일	회계기간	‘21.1.1.~’21.3.31.	‘21.4.1 ~ ’22.3.31.	‘21.4.1.~’22.2.28.	개업연월 다음 달 초일 ~ ‘22.3.31.	‘22.3.1~’22.3.31	개업연월일 ~ ‘22.3.31
개업연월일	회계기간								
‘21.1.1.~’21.3.31.	‘21.4.1 ~ ’22.3.31.								
‘21.4.1.~’22.2.28.	개업연월 다음 달 초일 ~ ‘22.3.31.								
‘22.3.1~’22.3.31	개업연월일 ~ ‘22.3.31								

② (중기업 이상인 타 기업과 지배·종속 관계) ‘주주명부’ 제출

③ (중소기업이 아닌 비영리법인) ▲ ‘기업규모 판단 증빙서류(㉠ 유형)과 ▲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~5호에 해당됨을 증빙하는 서류*

* (사회적기업) 사회적기업 인증서, (협동조합 등) 신고확인증 또는 설립인가증

④ (영업활동 중이 아닌 경우) ‘기업규모 판단 증빙서류(㉠ 유형)과 동일)

2 방역조치 미이행

- (대상) 관할 시·군·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
- (제출서류) ▲ 이의신청서*(필수), ▲ 시설분류확인서(필수, 시·군·구 발급
☞ 「붙임4」 참고)
 - * **이의신청 사유**를 "손실보상 대상 제외"로 체크하고, **상세내용**에는 "방역조치 미이행" 적시

※ 주의 : '방역조치 미이행' 사유는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

3 매출액 증가

- (대상) '19년 대비 '22년의 1~3월 일평균 매출액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
- (제출서류) ▲ 이의신청서*(필수), ▲ 인프라매출액 관련 증빙서류(해당자만)
▲ 부가세신고매출액 관련 증빙서류(해당자만)**
 - * **이의신청 사유**를 "손실보상 대상 제외"로 체크하고, **상세내용**에 "매출액 증가"를 적시한 다음 소명내용을 상세히 기술
 - ** 귀하의 '매출액 증가' 원인이 ①인프라매출액에 있는지, ②현금보정 과정에서 반영되는 부가세신고매출액에 있는지 또는 양쪽 모두에 있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증빙서류 모두 제출

< ① 인프라매출액 관련 증빙서류 >

인프라매출액은 국세청 전자정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**별도 서류로 정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**이며, ▲ 인프라매출액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아 특수산식이 적용된 경우(아래 ①, ②참고)나 ▲ 불합리하게 왜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(예 : 수수료매장, 정부 지침에 따른 업종 변경 ☞ 17p 참고)에만 제출

① 월별 인프라매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

- (대상) 해당 과세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특수산식을 적용하여 보상금이 최소 산정되었으나, 자신의 과세자료가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기본 산식을 통해 보상금을 재산정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
- (증빙자료) 해당 월에 실질적 영업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다음 자료

구분	제출 자료 (가능한 자료 전부 제출)	해당기간
매입세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※ 시기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	인프라매출액이 30만원 이하로 측정된 월 전체 (예 : 2022년 1월 인프라매출액이 25만원일 경우 '22.1.1~'22.1.31)
사회보험료 지출 내역 (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▲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(또는 내역), ▲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, ▲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 중 택 1 	
공과금 지출내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의 ▲전기요금, ▲수도요금, ▲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* 	

- * 납입영수증상 대표자명, 사업장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
- * 사업장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인 경우에는 타당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*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

② 월별 인프라매출액 값이 해당 연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의 2배 초과

- (대상) 특정 월의 인프라매출액이 과도하게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후 이를 확인하고 결제를 취소하였으므로, 문제가 된 결제내역은 제외하고 정상적인 인프라매출액만을 활용해 기본산식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
- (증빙자료) ①, ② 모두 제출한 경우만 인정 (제출하신 후에도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)

①	과도하게 발생한 인프라매출액을 증빙하는 자료	홈택스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발급 증빙
②	과도하게 발생한 인프라매출액을 취소했음을 증빙하는 자료	홈택스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취소 또는 정정 증빙

* 홈택스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

< ② 부가세신고매출액 관련 증빙서류(개업일 및 과세유형 등에 따라 구분) >

개업연월일	사업자 유형	과세유형	증빙서류
'19.2.28 이전	개인사업자	일반과세자	'19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
		간이과세자	'19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
		면세사업자	'19~'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
'19.3.1~'20.2.29	법인사업자	일반과세자	'19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
		면세사업자	'19~'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
		간이과세자	'20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
'19.3.1~'20.2.29	개인사업자	일반과세자	'20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
		간이과세자	'20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
		면세사업자	'20~'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
'19.3.1~'20.2.29	법인사업자	일반과세자	'20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
		면세사업자	'20~'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
		간이과세자	'20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
'20.3.1 이후	전체 유형	전체 유형	자료 제출 불필요 (지역·시설 평균 자료만 활용)

2 확인보상 부동산

※ 귀하의 확인보상금 산출 과정에 반영된 세부 항목* 중 정정을 희망하는 부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제출하셔야 합니다.

* 확인보상금 산출 세부 항목 : ①매출액 (인프라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등)
②영업이익률 및 인건비·임차료 비중 ③방역조치 이행일수 ④시설분류

1 인프라매출액 정정 희망

○ (대상)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월별 인프라매출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
○ (제출서류) ▲ 이의신청서*(필수), ▲ 인프라매출액 관련 증빙서류** (해당자만)

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금 금액"으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 "매출액 정정"을 적시한 다음 소명내용을 상세히 기술 (특히 인프라매출액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기술)

** 인프라매출액은 국세청 전자정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별도 서류로 정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, ▲ 인프라매출액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아 특수산식이 적용된 경우(아래 참고)나
▲ 불합리하게 왜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(17p 참고)에만 제출

< 인프라매출액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아 특수산식이 적용된 경우 >

1 월별 인프라매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

- (대상) 해당 과세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특수산식을 적용하여 보상금이 최초 산정되었으나, 자신의 과세자료가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기본 산식을 통해 보상금을 재산정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

- (증빙자료) 해당 월에 실질적 영업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다음 자료

구분	제출 자료 (가능한 자료 전부 제출)	해당기간
매입세액	·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※ 시기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	인프라매출액이 30만원 이하로 측정된 월 전체 (예 : 2022년 1월 인프라매출액이 25만원일 경우 '22.1.1~'22.1.31)
사회보험료 지출 내역 (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만)	· ▲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(또는 내역), ▲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, ▲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 중 택 1	
공과금 지출내역	·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의 ▲전기요금, ▲수도요금, ▲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*	

* 납입영수증상 대표자명, 사업장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

* 사업장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인 경우에는 타당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*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

㉓ 월별 인프라매출액 값이 해당 연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의 2배 초과

- (대상) 특정 월의 인프라매출액이 과도하게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후 이를 확인하고 결제를 취소하였으므로, 문제가 된 결제내역은 제외하고 정상적인 인프라매출액만을 활용해 기본산식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
- (증빙자료) ㉓, ㉔ 모두 제출한 경우만 인정 (제출하신 후에도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)

㉓	과도하게 발생한 인프라매출액을 증빙하는 자료	홈택스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발급 증빙
㉔	과도하게 발생한 인프라매출액을 취소했음을 증빙하는 자료	홈택스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취소 또는 정정 증빙

* 홈택스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

㉔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정정 (또는 면세수입금액 정정) 희망

- (대상)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면세수입금액이 경정되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- (제출서류) ▲ 이의신청서*(필수), ▲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 증빙서류 (필수)

* **이의신청 사유**를 "손실보상금 금액"으로 체크하고, **상세내용**에 "매출액 정정"을 적시한 다음 소명내용을 상세히 기술

<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 증빙서류(개업일 및 과세유형 등에 따라 구분) >

개업연월일	사업자 유형	과세유형	증빙서류
'19.2.28 이전	개인사업자	일반과세자	'19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
		간이과세자	'19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
		면세사업자	'19~'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
	법인사업자	일반과세자	'19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
		면세사업자	'19~'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
'19.3.1~'20.2.29	개인사업자	일반과세자	'20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
		간이과세자	'20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
		면세사업자	'20~'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
	법인사업자	일반과세자	'20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
		면세사업자	'20~'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
'20.3.1 이후	전체 유형	전체 유형	자료 제출 불필요 (지역·시설 평균 자료만 활용)

3 영업이익률, 인건비·임차료 비중 정정 희망 (A 타입)

(20년 이전 개업자 중 '기장신고자+기준경비율 대상자')

- (대상) 종합소득세·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되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- (제출서류) ▲이의신청서*(필수), ▲^①경정된 종합소득세·법인세 관련 신고자료 및 ^②'필요경비 구성 변경' 증빙서류 (필수)

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금 금액"으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"영업이익률 등 정정" 적시

<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: 신고·기장 유형 및 개업연월일에 따라 구분 >

신고 유형	기장 유형	개업연월일	서류 구분	증빙서류		
				명칭 (a~c 모두 제출)	대상 기간	
복식 부기		~'18.12.31	①종소세 신고자료	㉠표준재무제표	'19.1.1 ~ '19.12.31	
			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	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㉢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	
		'19.1.1~ '19.12.31		①종소세 신고자료	㉠표준재무제표	'20.1.1 ~ '20.12.31
				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	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㉢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
	'20.1.1~ '20.12.31		①종소세 신고자료	㉠표준재무제표	'21.1.1 ~ '21.12.31	
			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	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㉢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	
	'21.1.1~ '22.3.31		해당사항 없음			
	기장 신고	간편부	~'18.12.31	①종소세 신고자료	㉠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,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	'19.1.1 ~ '19.12.31
				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	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㉢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
'19.1.1~ '19.12.31				①종소세 신고자료	㉠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,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	'20.1.1 ~ '20.12.31
				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	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㉢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
'20.1.1~ '20.12.31			①종소세 신고자료	㉠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,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	'21.1.1 ~ '21.12.31	
			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	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㉢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	
				㉣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	

		'21.1.1~ '22.3.31		해당사항 없음	
추계 신고	기준 경비율	~'18.12.31	①종소세 신고자료	㉠추계소득금액계산서 (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) 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㉢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'19.1.1~ '19.12.31
			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		
		'19.1.1~ '19.12.31	①종소세 신고자료	㉠추계소득금액계산서 (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) 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㉢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'20.1.1 ~ '20.12.31
			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		
	'20.1.1~ '20.12.31	①종소세 신고자료	㉠추계소득금액계산서 (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) 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㉢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'21.1.1 ~ '21.12.31	
		'21.1.1~ '22.3.31		해당사항 없음	
	단순 경비율			해당사항 없음	

※ **필독** : **증빙서류 유형별 추가 안내사항**

증빙서류 유형	'대상 기간'의 의미	주의사항 (필독)
종소세 신고자료 ㉠표준재무제표 (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2호) ㉡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,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(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) ㉢추계소득금액계산서 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」 (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)	회계기간	① 종합소득세를 최초 신고할 때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, 해당 자료를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자료를 의미 ② 세무사·공인회계사의 서명날인과 함께 “종소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목적으로 세무사·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다” 는 내용의 문구가 세무사·회계사 자필로 씌어 있어야 함 (위 문구가 누락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) ③ 관할 세무서에 ▲수정신고, ▲경정청구 또는 ▲손금의 구성 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로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(형법 제137조), 사기죄(형법 제347조)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
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 ㉡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	'지급연월' (신고서 우측 상단에 위치)	-
㉢임대차계약서	계약서상의 '계약기간'이 포함해야 하는 기간	※ 이의신청자가 제출한 계약서 명칭이 “임대차 계약서”가 아니라면 계약 내용의 실질이 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서로 간주
㉢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이체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기간	※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임차내역을 확인 가능한 '이체확인증(또는 송금확인증)', '통장 사본 (예금주 계좌번호·은행명이 포함된 1면 뿐 아니라 전 기간 이체 내역을 확인 가능한 사본 필요)', '전자세금계산서(임대인, 임차인 발행 모두 가능)' 여야 함 (수기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)

< 법인사업자 제출서류 : 신고·기장 유형 및 개업연월일에 따라 구분 >

신고 유형	기장 유형	개업연월일	서류 유형	증빙서류	
				명칭 (a~c모두 제출)	대상 기간
기장 신고	복식 부기	~'18.12.31	①법인세 신고자료	㉠표준재무제표	'19.1.1 ~ '19.12.31
			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	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㉢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
		'19.1.1~ '19.12.31	①법인세 신고자료	㉠표준재무제표	'20.1.1 ~ '20.12.31
			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	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㉢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
'20.1.1~ '20.12.31	①법인세 신고자료	㉠표준재무제표	'21.1.1 ~ '21.12.31		
	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	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㉢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		
		'21.1.1~ '22.3.31	해당사항 없음		
추계 신고	법인사업자는 추계신고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				

※ 필독 : 증빙서류 유형별 추가 안내사항

증빙서류 유형	'대상 기간'의 의미	주의사항 (필독)
법인세 신고자료 ㉠표준재무제표 (법인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3)	회계기간	① 법인세를 최초 신고할 때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, 소득·손금의 액수 또는 구성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새로 작성한 자료를 의미 ② 세무사·공인회계사의 서명날인과 함께 "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목적으로 세무사·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다"는 내용의 문구가 세무사·회계사 자필로 씌어 있어야 함 (위 문구가 누락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) ③ 관할 세무서에 ▲수정신고, ▲경정청구 또는 ▲손금의 구성 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로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을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(형법 제137조), 사기죄(형법 제347조)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
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 ㉡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	'지급연월' (신고서 우측 상단에 위치)	-
㉢임대차계약서	계약서상의 '계약기간'이 포함해야 하는 기간	※ 이의신청자가 제출한 계약서 명칭이 "임대차 계약서"가 아니라면, 계약 내용의 실질이 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서로 간주
㉣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이체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기간	※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임차내역을 확인 가능한 '이체확인증(또는 송금확인증)', '통장 사본(예금주 계좌번호·은행명이 포함된 1면 뿐 아니라 전 기간 이체 내역을 확인 가능한 사본 필요)', '전자세금계산서(임대인, 임차인 발행 모두 가능)' 여야 함 (수기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)

4 영업이익률, 인건비·임차료 비중 정정 희망 (B 타입)

(21년 이후 개업자 + (개업 시기 무관) 단순경비율 대상자)

- (대상) 보상금 산정 시 업종·시설 평균값이 적용된 영업이익률 또는 인건비·임차료 비중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
* 21년 이후 개업자 : ▲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'21.1.1.~'22.3.31. 사이인 개인 사업자 또는 ▲법인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이 '21.1.1.~'22.3.31.인 법인사업자를 의미

- (제출서류) ▲이의신청서*(필수), ▲^①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와 ^②인건비 증빙서류·^③임차료 증빙서류** (필수)

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금 금액"으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"영업이익률 등 정정" 적시

** ▲손익계산서와 ▲인건비·임차료 증빙서류는 반드시 **함께 제출**해야 함

< 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 >

- ◇ (요건 1)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상법」에 근거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될 것
- ◇ (요건 2) 세무사·공인회계사의 서명날인과 함께 "세법에 따른 적격증빙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세무사·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다"는 문구가 세무사·공인회계사 자필로 씌어 있어야 함 (위 문구가 누락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)
- ◇ (요건 3) 이의신청자의 개업시점을 고려하여 회계기간이 다음과 같을 것

이의신청자의 개업연월일	회계기간
~'18.12.31.	'19.1.1.~'19.12.31.
'19.1.1.~'19.12.31.	'20.1.1.~'20.12.31.
'20.1.1.~'20.12.31.	'21.1.1.~'21.12.31.
'21.1.1.~'22.3.31.	개업한 날부터 '22.3.31.까지

☞ **이상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익계산서만 인정**

< ② 인건비 증빙서류 :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소득세법 시행규칙) >

- 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경우, 손익계산서 회계기간과 동일한 기간*에 해당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

* 동일한 기간 :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오른쪽 상단의 '지급연월' 기준

이의신청자 개업연월일	손익계산서 회계기간	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간
~'18.12.31.	'19.1.1.~'19.12.31.	'19년 1월부터 '19년 12월까지(총 12개월차)
'19.1.1.~'19.12.31.	'20.1.1.~'20.12.31.	'20년 1월부터 '20년 12월까지(총 12개월차)
'20.1.1.~'20.12.31.	'21.1.1.~'21.12.31.	'21년 1월부터 '21년 12월까지(총 12개월차)
'21.1.1.~'22.3.31.	개업한 날부터 '22.3.31.까지	개업한 달부터 '22년 3월까지

< ③ 임차료 증빙서류 :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(모두 제출) >

◇ 손익계산서 회계기간이 계약기간에 포함된 임대차계약서

* 이의신청자가 제출한 계약서 명칭이 "임대차계약서"가 아니라면, 계약 내용의 실질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로 간주

◇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지출내역 (다음 중 택일)

-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이체확인증·송금확인증 등 (명칭은 은행마다 다름)
-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 (예금주·계좌번호·은행명이 포함된 1면 뿐 아니라 전 기간 이체 내역을 확인 가능한 사본 필요)
-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*

* 임대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(=매출세금계산서)와 임차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(=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) 모두 가능 (수기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)

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을 희망하는 사업자

- (대상)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- (제출서류) ▲ 이의신청서*(필수), ▲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(필수, 시·군·구 발급, 「붙임5」 참고), ▲ 시설분류확인서(해당자만 필수, 시·군·구 발급)
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금 금액"으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"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" 적시

※ (주의) '시설분류확인서'는 보상 대상 기간('22.1.1.~'22.3.31.) 중 사업장을 이전하여 관할 지자체가 변경된 사업자만 해당

☞ ① 변경 전 지자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, ② 변경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

⑥ 시설분류 정정을 희망하는 사업자

- (대상)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시설분류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- (제출서류) ▲ 이의신청서*(필수), ▲ 시설분류확인서(필수, 시·군·구 발급)
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금 금액"으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"시설분류 정정" 적시

3 그 밖의 신청 유형

① **[방역조치 위반 정정]**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·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·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
○ (제출서류) ▲ 이의신청서*(필수), ▲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(필수, 시·군·구 발급, 「붙임6」참고)

* **이의신청 사유**를 "손실보상금 감액·미지급"으로 체크하고, **상세내용**에는 "방역조치 위반 사실 정정" 적시

② **[보상금 환수]** 「소상공인법」 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

○ (제출서류) ▲ 이의신청서*(필수), ▲ 이의신청 소명자료**(필수)

* **이의신청 사유**를 "손실보상금 환수"로 체크

** 소명자료 검토 이후, 필요시 **자료 보완** 또는 추가 **제출 요청** 가능

③ 담당자 착오

○ (대상) 관할 시·군·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,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

* **휴대전화·공동인증서** 등 본인 인증수단은 있으나,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신청자가 시·군·구 방문 시, **지자체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 보조** 지원

- (요건 ①)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·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

- (요건 ②)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상.kr) 지급 신청 화면에 입력하여,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

※ (주의) 상기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가 아닌데도 보상금 동의 철회서를 허위 발급받아 손실보상금 수급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(형법 제137조), 사기죄(형법 제347조)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

○ (제출서류) ▲ 이의신청서*(필수), ▲ 보상금 동의 철회 확인서(필수, 시·군·구 발급, 「붙임7」참고) ▲ 보상금 부동의 관련 증빙서류**(필수)

* **이의신청 사유**를 "손실보상금 금액"으로 체크하고, **상세내용**에는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지자체 담당자 착오로 잘못 동의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 및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 적시

** "보상금 부동의 관련 증빙서류"는 10~17쪽을 참고하여 이의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

참고 : 신청유형과 관계없이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

- ◇ 당사자 간의 계약방식 및 정부 지침 등 외부 변수로 인해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가 불합리하게 달라졌음을 당사자가 직접 소명·입증하여야 하는 경우들입니다.
- ◇ 각 이슈가 발생하는 양상에 따라 다양한 이의신청 유형이 존재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신청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- ◇ 아래에 소개되지 않은 이슈가 있다면 '이의신청서'에 자세한 상황을 기술하신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1] 수수료매장

○ (개념) 가맹본부·대규모유통업자와의 계약방식*으로 인해 보상금 산정 과정에 구조적 왜곡이 발생한 사업자

* 고객의 결제 대금을 가맹본부·대규모유통업자 명의(신용카드 POS기 등)의 매출액으로 올린 후 사후 정산 시 수수료를 제한 다음 사업자에게 할당된 매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

○ 가능한 이의신청 유형

- (보상대상 제외) 모든 유형

- (확인보상 부동의) ▲매출액 정정 ▲영업이익률, 임차료·인건비 비중 정정

○ 추가 제출서류

증빙서류	참고사항		
(1) 손익계산서	① '19.1월(또는 개업일)~'22.3월 손익계산서		
	② 신고·기장 유형에 따른 분류		
	기장신고	복식부기	표준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
		간편장부	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,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
추계신고	기준경비율	중소세 신고자료 중 '추계소득금액계산서 (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참조)	
	단순경비율	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손익계산서 (별도 양식 제한 없음)	
※ 단, 22.1~22.3월분은 기장·신고유형에 상관없이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손익계산서로 제출 필요 (별도 양식 제한 없음)			

<p>(2) 프랜차이즈 본사 및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계약서</p>	<p>① '19.1월(또는 개업일)~'22.3월 계약서 ② 계약서에는 임차료율, 수수료율 등 프랜차이즈 본사·대규모유통업자와 개별 업체 간의 정산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※ 계약서 '본문'과 '별첨'을 포함한 전체 문건을 제출해야 완전한 증빙 가능</p>												
<p>(3) 매출액 정산 내역 (별도로 정해진 양식 없음)</p>	<p>① '19.1월(또는 개업일)~'22.3월 매출액 정산 내역 ② 매출액 정산 내역에는 총판매금액, 임차료 금액, 카드수수료 금액, 정산금액, 정산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함 ※ 즉, 총액(고객의 최초 결제 대금 총합)과 순액(수수료를 제외한 판매 대금 총합)이 정산 내역에 모두 포함될 필요</p>												
<p>(4)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증빙자료</p>	<table border="1"> <tr> <td rowspan="3">개인사업자</td> <td>일반과세자</td> <td>19~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</td> </tr> <tr> <td>간이과세자</td> <td>19~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</td> </tr> <tr> <td>면세사업자</td> <td>19~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법인사업자</td> <td>일반과세자</td> <td>19~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</td> </tr> <tr> <td>면세사업자</td> <td>19~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</td> </tr> </table>	개인사업자	일반과세자	19~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	간이과세자	19~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	면세사업자	19~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	법인사업자	일반과세자	19~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	면세사업자	19~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
개인사업자	일반과세자		19~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										
	간이과세자		19~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										
	면세사업자	19~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											
법인사업자	일반과세자	19~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											
	면세사업자	19~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											

* 제출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이의신청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

2 정부 지침에 따른 사업자 변경

○ (개념) 정부 지침에 따라 업종 등을 변경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써의 영업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

* 예) 체육시설법령(문체부 소관) 개정에 따라 일부 체육시설업의 업종 변경을 권고받아 사업자 폐업 처리 후 재등록하여 사업자번호가 바뀐 상황

○ 가능한 이의신청 유형

- (보상대상 제외) 모든 유형
- (확인보상 부동의) 매출액 정정

○ 추가 제출서류

순번	증빙서류	필수여부	발급처
1	폐업사업자의 폐업사실증명원	필수	
2	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(개인) 또는 법인등기부(법인)	필수	
3	[문체부]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(업종* 표시 必)	필수	지자체

* 야구장업, 가상체험체육시설업, 체육도장업(합기도), 체육교습업, 인공암벽장업 등 5개 업종

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[별지 제2호서식]

이의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	
이의 신청인 (대표자)	[] 개인사업자	상호명	
		대표자 성명	사업자 등록번호
	[] 법인사업자	상호명	법인명
		대표자 성명	사업자 등록번호

이의신청(다음중 택일) : [] 손실보상 대상 제외, [] 손실보상금 금액, [] 손실보상금 감액·미지급,
[] 손실보상금 환수

상세내용

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(지역별 시설분류확인서 일련번호 기입(예 : 서울종로시설-00001))

시설분류확인서

※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이행 대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

사업자등록번호		개업연월일	
대표자 성명		연락처 (휴대전화)	
업체명			
사업장 주소			
시설 유형	※ 시설 유형은 별도로 제공되는 '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 시설 목록'에서 선택하여 기입		

2022.1.1.일부터 3.31.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자의 시설분류를 확인하오니, 「소상공인 손실보상」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월 일

자치단체장 명의 직인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(지역별 방역조치 이행 시설확인서 일련번호 기입(예 : 서울종로이행-00001))

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

※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이행 대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

사업자등록번호	개업연월일		
대표자 성명	연락처 (휴대전화)		
업체명			
사업장 주소			
시설 유형	※ 시설 유형은 별도로 제공되는 '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 시설 목록'에서 선택하여 기입		
방역조치 기간	집합금지	영업시간 제한	시설인원 제한
	'22. . . . ~ '22. . . . (.00일), '22. . . . ~ '22. . . . (.00일), ⋮ (총 00일간)	'22. . . . ~ '22. . . . (.00일), '22. . . . ~ '22. . . . (.00일), ⋮ (총 00일간)	'22. . . . ~ '22. . . . (.00일), '22. . . . ~ '22. . . . (.00일), ⋮ (총 00일간)
방역조치 이행기간	집합금지	영업시간 제한	시설인원 제한
	'22. . . . ~ '22. . . . (.00일), '22. . . . ~ '22. . . . (.00일), ⋮ (총 00일간)	'22. . . . ~ '22. . . . (.00일), '22. . . . ~ '22. . . . (.00일), ⋮ (총 00일간)	'22. . . . ~ '22. . . . (.00일), '22. . . . ~ '22. . . . (.00일), ⋮ (총 00일간)

※ 방역조치 기간 및 방역조치 이행기간은 해당되는 날짜를 모두 작성

2022.1.1.일부터 3.31.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하였음을 확인하오니, 「소상공인 손실보상」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월 일

자치단체장 명의 직인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붙임6

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

(지역별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최종처분 내역 일련번호 기입(예 : 서울종로처분-00001))

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(처벌) 내역서

※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이행 대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

사업자등록번호								개업연월일	
대표자 성명								연락처 (휴대전화)	
업체명									
사업장 주소									
시설 유형	※ 시설 유형은 별도로 제공되는 '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 시설 목록'에서 선택하여 기입								
위반행위일	1회('22.0.0), 2회('22.0.0), ..								
위반법령									
위반내용	○ 1회 위반 내용 : ○ 2회 위반 내용 :								
처분(처벌) 내용	벌금 ()	운영중단 ()	폐쇄 ()	과태료 ()	미확정 ()	무혐의 ()	지자체 오분류 ()		
처분일(처벌일)	1회 ('22.0.0) 2회 ('22.0.0) ⋮	1회 ('22.0.0) 2회 ('22.0.0) ⋮	1회 ('22.0.0) 2회 ('22.0.0) ⋮	1회 ('22.0.0) 2회 ('22.0.0) ⋮	1회 ('22.0.0) 2회 ('22.0.0) ⋮	1회 ('22.0.0) 2회 ('22.0.0) ⋮	1회 ('22.0.0) 2회 ('22.0.0) ⋮		
처분(처벌)기간	1회 ('22.0.0) ~ '22. 0.0)(00일간) ⋮		1회 ('22.0.0) ~ '22. 0.0)(00일간) ⋮						

※ 처분(처벌) 내용은 과태료·운영중단·폐쇄·벌금 등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표시

※ 방역조치 위반행위일 및 처분일(처벌일)은 해당되는 날짜를 모두 작성

2022.1.1.일부터 3.31.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위반한 바, 위와 같이 처분 내지 처벌 되었음을 확인하오니, 「소상공인 손실보상」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월 일

자치단체장 명의 직인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※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‘집합금지’ 또는 ‘영업시간 제한’ 또는 ‘시설 내 인원제한’ 조치 이행 대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

사업자등록번호		업체명	
대표자 성명		연락처 (휴대전화)	
사업장 주소			
손실보상금 (신속보상) 신청 일자		손실보상금 (신속보상) 지급 일자	
지급된 보상금 총액	금 □억 □천□백□십□만 □천□백□십원 정		
신청·지급 철회 동의	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상금이 신청·지급되었으므로 보상금 신청·지급 철회에 동의합니다. (신청자 성명, 서명 또는 인)		

위 신청인에 대해 지자체 신청·접수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상금이 신청·지급된 바, 이에 대해 신청인은 기 신청된 보상금 신청과 지급 건에 동의하지 않으며, 이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자치단체장 명의 직인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